

안전 · 품질표시

(섬유제품, 가죽제품)

2010. 01. 11

목 차

- I. KC 마크란?
- II. 법령 및 규칙
- III.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IV. 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

1

섬유제품

2

가죽제품

3

공통사항

국가 통합인증마크의 필요성

- 법정인증과 민간인증 포함 국내 총 158개의 인증제도 존재
- 중복인증의 불편함 해소 및 시간, 비용의 절감
-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상호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 요구
-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유출의 문제 방지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이름	마크	나라	사 례
CE		EU	1993년부터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강제인증제도 통합
PS		일본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
CCC		중국	WTO가입후 국내품(CCEE),수입품(CCIE) 강제인증을 '02년부터 CCC로 통합

국가 통합인증마크(KC)

- www.kcmark.or.kr 의 게시내용



추진일정

-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사용



K와 C를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속성 표현

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법률 제9430호)
-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
-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81호)

* 법률정보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목적

-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과 안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

Ⅲ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주요내용 분류

-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 시험·검사, 공장심사 하여 안전성 증명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 공산품중 제품 검사만으로 그 위해 방지할 수 있는 제품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 취급 사용 운반 과정에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표시 준수사항

● KC 마크의 표시

-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모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대상공산품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표시대상공산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 KC 마크(안전품질표시)의 표시위반

- 안전·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자, 안전·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39조**]
-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한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41조**]

안전·품질표시대상제품

● 적용범위

- *의류 및 그밖의 ** 섬유제품 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주)

*의류 :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학생복, 한복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방석류, 쿠션류, 모포, 침낭, 카페트, 모자, 장갑, 양말, 기저귀, 수의, 가발,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솔, 넥타이, 모기장, 덮개, 가방, 턱받이, 커튼류, 신발

● 제외대상

- 맞춤복은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사항(안전·품질표시대상)

● 세탁라벨

- 기존과 동일 하되 “**표시자**” 추가
- 제조년월, **치수** 표시할 것을 권장
-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주**제품은 **교리표**로 가능
[**주**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운동화, 수의류, 타올, 벅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

● 포장, 교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

- **제조년월, 치수** 표시 [**권장사항, 2011년부터 필수예정**]
-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요건적합 표시 : 적합성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표시사항에 “**기준에**
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
- **KC마크** 를 표시하여야 한다.

치수표기 :

<http://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정보활용 /
의류제품치수 표준화 / KS
의류치수 규격검색 / 알기쉬운
KS의류 치수검색]

개별제품별 표시(별표1)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 의류 -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학생복, 한복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 사용제품에 한한다) 다만, 다운제품은 솜털(다운), 깃털(페더), 기타로 구분하여 % 표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5. 치수(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섬유제품 I - 제품치수 표시가 필요한 기타 섬유제품 - 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카페트, 방석류, 쿠션류, 신발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5. 치수(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섬유제품 II - 액세서리 등 치수표기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슈, 가방, 커튼 등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5. 치수(권장사항, 2011년 필수예정)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포장 또는 꼬리표 등(별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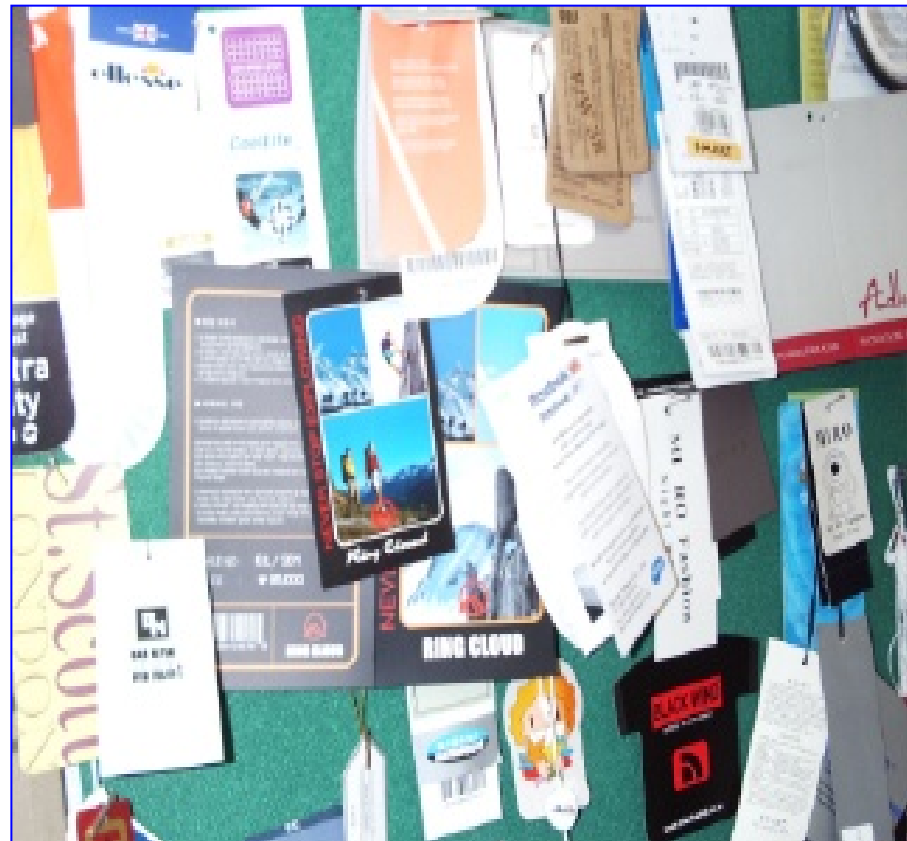
			섬유 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연월	제조 자명	수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 국명 ⁴⁾	취급상 주의사항	소비자상담실	방염제품 여부	치수 ⁵⁾
의류	1) <u>의의류</u>		○ ³⁾	○	○	○	○	○	○	○	-	○
	2) <u>중의류</u>		○ ³⁾	○	○	○	○	○	○	○	-	○
	3) <u>내의류</u>		○ ³⁾	○	○	○	○	○	○	○	-	○
	4) 유아용 및 아동용 의류		○ ³⁾	○	○	○	○	○	○	○	-	○
	5) 학생복		○ ³⁾	○	○	○	○	○	○	○	-	○
	6) 한복		○ ³⁾	○	○	○	○	○	○	○	-	○
기타	기 검 제 I 타 유 품 ²⁾	이불 및 요	○ ³⁾	○	○	○	○	○	○	○	-	○
		모포	○ ³⁾	○	○	○	○	○	○	○	-	○
		침낭	○ ³⁾	○	○	○	○	○	○	○	○	○
		카펫	○ ³⁾	○	○	○	○	○	○	○	○	○
		모자	○ ³⁾	○	○	○	○	○	○	○	-	○
		장갑	○ ³⁾	○	○	○	○	○	○	○	-	○
		양말류	○ ³⁾	○	○	○	○	○	○	○	-	○
		기저귀류	○ ³⁾	○	○	○	○	○	○	○	-	○
		신발류	○ ³⁾	○	○	○	○	○	○	○	-	○
	기 검 제 II 타 유 품 ²⁾	수의류	○	○	○	○	○	○	○	○	-	-
		가발류	○	○	○	○	○	○	○	○	-	-
		손수건	○	○	○	○	○	○	○	○	-	-
		타올	○	○	○	○	○	○	○	○	-	-
		머플러	○	○	○	○	○	○	○	○	-	-
		스카프	○	○	○	○	○	○	○	○	-	-
		솔	○	○	○	○	○	○	○	○	-	-
		넥타이	○	○	○	○	○	○	○	○	-	-
		모기장	○	○	○	○	○	○	○	○	-	-
		덮개류	○	○	○	○	○	○	○	○	-	-
		가방	○	○	○	○	○	○	○	○	-	-
		텍스타일류	○	○	○	○	○	○	○	○	-	-
		커튼	○	○	○	○	○	○	○	○	○	-

표시사항 (사례)

개별제품별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 번 :	
호칭(사이즈) :	
섬유의 혼용율	
몸 판 :	나이론 65%
	폴리우레탄 35%
배 색 : 폴리우레탄100%	
취급상 주의사항	
	
원산지 : 한 국	
수입자 : (주)저작권	
판매자 : (주)저작권	
제조년월 : 2004년 09월	
소비자 상담실	
TEL : 서울 (XXX)XXX-XXXX	
김해 (XXX)XXX-XXXX	

교리표 표시



표시사례 (영구라벨)

KC 마크 적용 이전



KC 마크 적용 이후



용어의 정의(안전요건 구분)

- **아동용 섬유제품 : 36개월 초과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
 -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타이즈류, 양말류, 신발류 등을 말한다
- **내의류 :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거터벨트류, 코르셋류(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등을 말한다
- **중의류 :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 블라우스, 바지, 셔츠, 타올, 장갑,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가발 등
- **외의류 :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
 -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베스트, 조끼, 스카프, 신발 등을 말한다
- **침구류 : 잠을 자는데 이용하는 제품**
 - 이불 및 요, 모포, 침낭, 커버, 시트, 카페트 등을 말한다

5% 미만(면적)의 배색은
적용에서 제외

모기장, 덮개, 방석류, 쿠션류,
수의, 가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구분별 안전(KC)요건

유해물질	제품구분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종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비 고
pH		4.0 ~ 7.5			4.0 ~ 9.0	아동용, 내의류, 종의류의 경우 '10년12월31일까지 "4.0~8.0" 적용
폼알데하이드(mg/kg)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mg/kg)		30 이하			300 이하	염색한 경우에 적용.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 유량(%)	0.1 이하	-	-	-	-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에 적용(대상물질: DEHP, BBP, DBP)
유 기 주 석 화 합 물 (mg/kg) TBT (tributyltin)	0.1 이하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다 이 메 틸 푸 마 레 이 트 (mg/kg)	0.1 이하					피혁 및 모피 등 가죽소재가 되어있는 부 분만 적용
방 염 제 (TDBPP, PentaBDE, OctaBDE)	사용하지 말것					방염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KS C IEC 62321에 따른다)
납(mg/kg)	90 이하	-	-	-	-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가 사용된 부 분에 적용 (금속류 기준 : 300 mg/kg)
코드 및 조임끈	적합	-	-	-	-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해야함 연령구분 KS K 0941. 적용범위 12세 이하
알러지성 염료	사용하지 말것			-	-	알러지염료로 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대상물질 KS K 0736)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요구성능

● 일반 요구사항

- 끝 처리는 매듭짓지 않고 열처리 또는 끝맺음 처리로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토글은 양쪽이 없는 조임 끈이나 장식성 코드에만 사용
- 허리끈을 제외하고 조임 끈, 장식성코드 및 기능성 코드가 의복의 뒤쪽에서 나오면 안됨
- 끈의 중앙을 고정되어 심하게 조이거나 쉽게 빼낼 수 없어야 한다
- 루프의 경우 빠져나온 고정된 둘레가 75mm 이상이면 안된다

● 후드

- 유아복 (36개월 이하)

- * 후드나 목 주위에 조임끈 및 코드가 있어서는 안된다

- 아동복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

- * 몸에 맞는 크기로 작게 조였을 때 양끝 길이가 75mm 이하, 최대 벌렸을 때 빠져나오면 안됨
- * 기능성 코드의 양끝 길이는 75mm 이하
- * 장식성 코드는 탄성이 있으면 안되며 토글 같은 장식 포함 길이가 75mm 이하
- * 할터 넥 끈은 양 끝이 의복에 연결된 한 가닥의 코드여야 함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요구성능

● 의복의 허리부분

- 평평하게 할 때 빠져나온 양끝의 길이가 140mm 이하, 허리 사이즈로 조였을때 280mm 이하

● 밑단

- 의복의 밑단이 엉덩이 아래에 있는 경우 토글을 포함하여 끈 및 코드는 밑단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되고 조였을 때 옷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 발목까지 오는 코트, 바지, 치마의 경우 밑단으로 부터 끈 및 코드가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 어깨 끈

- 옷 단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며, 고정이 안 된 지점부터 고정되는 지점까지 360mm 이하

● 소매

- 긴 소매 밑단의 끈 및 코드는 조였을 때 완전히 옷 안쪽에 있어야 함

● 의복의 다른 부분

- 기타 다른 부분에서 의복을 최대한으로 벌렸을 때 끈 및 코드의 빠져 나온 길이가 140mm 이하여야 한다

안전 · 품질표시대상제품

● 적용범위

***가족제품 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

[안전 · 품질표시 부속서 3 “가족제품”]

주]

가족제품 : **천연가족(피혁) 및 ***인조가족(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의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이상인 제품으로 가죽 및 모피의류 제품류(장갑류 포함), 벨트류 (벨트, 허리띠), 가방류(핸드백류), 소파류, 지갑류, 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천연가족 :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원단(양,소,돼지,악어 등의 피혁을 포함한 동물가죽)**

*****인조가족 :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인조피혁 원단(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마이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인조가죽의 총칭)을 의미한다**

******천연모피 :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모피)을 의미한다**

표시사항(안전 · 품질표시대상)

● 품명

- “**가죽제품**”이라 표시한다

● 영구라벨

- 개별 제품에 박음질 또는 동등한 방법으로 **[별표1]**의 사항 부착
-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 할수 있는 ***제품**은 종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가죽 및 모피의류는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의 표시는 섬유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원단의 표시와 주의사항은 가죽제품의 표시규정에 따른다

주) * : 지갑류,가방류, 핸드백류, 벨트류, 신발류, 소파류 등

세부표시사항

● 조성표시

- 재료의 종류를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해 모두표시, 신발류는 **갑피,창을 구분**하여 표시
- 천연피혁은 ***동물명**을 표시하고, 합성피혁은 **합성(인조)가족**으로 표시
- 천연모피는 ****동물명**을 표시한다
주) *예) 소가족, 양가족, 돼지가족 **예) 밍크, 토끼, 여우, 너구리
- 가족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원단일때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
- 충전재(쿠션재)는 사용한 제품에 한하여 그 재료명을 표시한다 (소파에 한함)

● 치수 표시

- 신발치수는 KS G 3116(구두)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mm를 표시
- 소파치수는 본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 직방체를 가로, 세로, 높이를 cm표시
- 치수 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세부표시사항

● 단위

- 성분, 성능, 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로 표시한다

● 제조국명

- 수입제품의 제조국명의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규정에 따른다

●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2]**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KC마크** 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죽제품의 표시사항[별표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1. 품 명
2. 모델명
3. 재료의 종류
4. 치 수
5. 충전재 (쿠션재)
6. 제조연월 (권장사항, 2011년 부터 필수예정)
7. 제조자명
8.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11. 취급상 주의사항

가족제품의 표시사항[별표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 가족 및 모피의류

- 세탁(벤젠 사용의 경우 포함)또는 물로 씻을 때 색바램 및 경화의 우려가 있음
- 겹쳐두지 않음, 온 습도가 낮고 통풍 잘되는 곳에 보존, 특히 장마철 응달에 건조할것
- 가족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전문용의 크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족의 것에 있어서는 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것
-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형궤를 사용, 증기다리미는 사용하지 말것

● 가방 및 핸드백

- 천연가족일 경우 : 마른수건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것, 건조, 보존 온습도 주의
- 합성가족 : 건조시 응달에서 말릴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피할것, 화기 피할것, 때를 빼기 위해 비눗물에 적신 천 사용,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신발

- 천연가족 : 건조시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 직사광선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 할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적정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 합성가족 : 건조시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피할것, 화기 피할것, 때를 빼기 위해 비눗물에 적신 천 사용,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개별제품 표시사항(가죽의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품 명 : 가죽 제품
 호 칭 : 85-150
 모 델 명 : 여성 양가죽코트 AA-BB
 신 체 치 수 (cm)
 가슴둘레 : 85
 키 : 150
 재료의 종류
 겉 감 : 소가죽
 안 감 : 폴리에스터 100 %
 수입자명 : (주) 글로벌 어패럴
 소비자 상담실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123-45
 전화번호 : 02) 1234-5678
 제조국명 : 중 국

사용상 주의사항

1.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의 색이 바래지거나 경화될 수 있습니다.
2. 겹쳐두지 말고 온도,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십시오.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3. 가죽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의류 전문용의 크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의 경우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어 주십시오.
4.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깔 후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기타 주의사항……

검
사
필

가죽제품 필수 표시사항

품 명 : 가죽 제품이라 표시
 모델명
 재료의 종류
 치수 : 가죽의류(신체치수),
 신발, 소파에 적용
 충전재(쿠션재) : 사용한
 제품에 한함
 -제조년월 : 의류는 권장사항
 -제조자명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 가죽의류는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을 따르며 다만 원단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규정에 따름

가족제품 꼬리표 사례

- 신발, 소파의 경우 치수 표시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그 재료명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표시

품 명 : 가족 제품
모 델 명 : 여성 핸드백 AA-BB
재료의 종류 : 소가족
제조자명 : SHANGHAI INC
수입자명 : (주)글로벌 상사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123-45
전화번호 : 02) 1234-5678
제조국명 : 중 국
제조년월 : 2007. 05

천연가족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가방 및 핸드백의 경우)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마시고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3.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십시오.
4. 기타 주의사항.....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가능한 피하여 주십시오.
3.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4.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해서는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합성수지제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
(신발의 경우)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3. 더러워졌을 때에는 솔로 잘 닦으십시오.
4. 보존 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하십시오.
5. 기타 주의사항.....

1. 응달에서 말리십시오.
2.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가능한 피하여 주십시오.
3.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4.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해서는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5. 기타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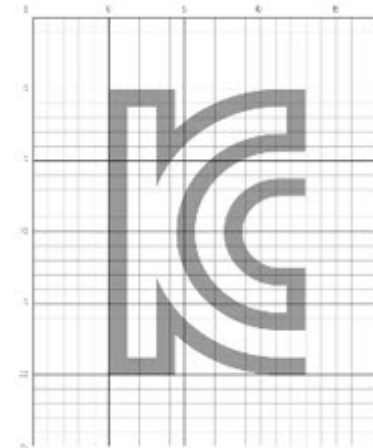
구분별 안전(KC)요건

제품구분 유해물질	천연가죽 [피혁]	인조가죽	천연모피	비 고
폼 알 데 하 이 드 [mg/kg]	300 이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장갑,바지 등]은 75 [mg/kg] 이하
염소화페놀류(PCP) [mg/kg]	5 이하	0.5 이하	5 이하	PCP 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
6가 크로뮴[mg/kg]	3.0 이하	0.5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0.1 이하			
pH	3.0~9.0			2011년 부터 적용 계획
*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가방은 “유아용섬유제품기준”[자율안전확인]으로 관리함				

KC 마크

● KC 마크 도안요령

– 안전 · 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오른쪽과 같다. (<http://www.kcmark.or.kr>)



– 안전 · 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색도 가능하다.



시행 시기

●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 (지경부령 81호 제5조)
- 적용시점은 제조일자 기준으로 함

● 표시의 내용

- KC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조연월 및 치수의 표시 (권장사항, 2011년 부터 필수)
- 안전요건 적합 사후관리(5월31일까지 계도기간 설정) 시판품 조사

● 시험기관

- 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ILAC, KOLAS..등) 에서 시험할 수 있다

규제물질 유의대상 제품

규제물질	제품	재 질	색 상
폼알데하이드		카라 모자 단추 부위에 들어가는 심지, 면 등에 수지가공된 제품 (shrinkage-resistance creas-resistance, easy-care finishing 등), 원단의 코팅부위 (벨벳), 모피, 펄(글리터 또는 반짝이)함유 원단, 모직물	무관
아릴아민		폴리에스테르 재질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면이나 레이온, 나일론, 가죽에서 검출됨	검은색, 짙은 갈색, 빨간색과 같은 짙은 색 계열의 염료 에서 검출됨. 상대적으로 연한색 계열에서는 검출되는 경우가 적은편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PVC 제품(PVC 와펜, PVC 코팅)	무관
유기주석화합물 TBT (tributyltin)		폴리우레탄 재질에서 검출. 폴리우레탄 코팅 섬유, 방수처리된 요 (PU 코팅), 라미네이트 제품(제품 열 접착시 사용되는 PU 필름)	무관
다이메틸푸마레이트		가죽이나 실리카 겔이 해당제품이며, PU코팅/인조가죽 제품에서 검출되나 해당 규제는 모피 및 피혁 소재에만 적용됨	무관
납		섬유장신구(금속재질 및 라인스톤, 라인스터드 등), 페인팅(프린팅) 원단, 가방끈 원단, 고무줄 밴딩	무관
알러지성 염료		폴리에스테르 와 아세테이트가 해당제품이나 아세테이트 제품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으며,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재질에서 검출됨	검은색, 짙은 갈색, 빨간색과 같은 짙은 색 계열의 염료 에서 검출됨. 상대적으로 연한색 계열에서는 검출되는 경우가 적은편임

고맙습니다